

자체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조선왕릉관리소]

- 조선왕릉 동부, 중부, 서부지구관리소 -

2016. 1.

문 화 재 청

#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대상기관	1
3. 감사중점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원가산정 및 검토에 관한 사항(경고)	3
2. 국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주의)	6
3. 공사발주 및 계약에 관한 사항(주의)	8
4.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배치에 관한 사항(주의)	10
5. ‘금곡 양묘장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의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주의)	11
6. ‘2014년 광릉 방화선 정비사업’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시정)	13
7. 조경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시정)	14

8. 국유재산 유상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경고)	15
9.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인 건의 계약에 관한 사항(주의)	17
10. ‘방화선 정비사업’ 문화재수리업자 입찰참여 조건에 관한 사항(주의)	19
11. ‘선릉·정릉 야간 경관등 전기선로 보수공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시정)	21
12. ‘현릉 방화선 설치공사’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에 관한 사항(시정)	23
13.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조경공사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시정)	24
14. 공사분리 발주에 관한 사항(주의)	25
15.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주의)	27
16. ‘화성 용·건릉 상수도관 인입 및 급수전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시정)	29
17. ‘과주 삼릉 상수도관 공사’에 관한 사항(시정)	30
18. 조경공사 관련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에 관한 사항(제도상 개선)	31
1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적격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주의)	32
20. 다목적 산불진화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통보)	33
21. 회계관계 직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주의)	34
22. 세출예산의 목적 외 집행에 관한 사항(경고)	35
23.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시정)	36
24. 경복궁관리소 시설물 및 편의시설 등 관리에 관한 사항(시정)	37
25. 물품의 정기재물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시정)	38
26. ‘경복궁 광화문 대표소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시정)	40

# I. 감사실시 개요

---

## 1. 감사목적

조선왕릉(동부,중부,서부지구관리소)는 능·원·묘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실시하고 소관 조선왕릉에 대한 전시·조사·관리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문화재청 감사 규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자체종합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되며 기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 2. 감사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조선왕릉관리소 동부, 중부, 서부지구관리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3. 감사중점

직원 현황은 동부지구관리소는 총 122명(정규직 20명, 비정규직 102명), 중부 지구관리소는 총 161명(정규직 22명, 비정규직 139명), 서부지구관리소는 총 140명(정규직 20명, 비정규직 120명)으로 각 지구관리소에 대한 시설물 안전 및 물품관리, 시설공사 및 용역계약 적정성, 수목관리, 비정규직 직원 관리·복지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였다.

##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5. 10. 12. 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총 15일간 감사인력 3명이 감사를 실시 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청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6. 1. 11.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 하였다.

##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 별첨

---

#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

## 경 고 요 구

제 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원가산정 및 검토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조선왕릉관리소

내 용

조선왕릉관리소는 「남양주 홍릉과 유릉」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 실시설계' 를 (주)기술사사무소 ○○○○와 계약(계약기간 '14.9.15~'14.10.29./계약금액 39,540천 원)을 체결하였고, '14.11.19. 홍·유릉 내 잣나무 2주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자, 상기의 실시설계를 근거로 예정가격을 산정한 후 '2014년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용역을 (주)□□□□□□□과 계약(계약기간 '14.11.28.~'14.12.26./계약금액 120,450천 원)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가 '2015년 홍유릉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을 발주하여 ○○○○○○과 계약(계약기간 '15.2.5.~'15.3.6./계약금액 216,448천 원)을 체결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주)기술사사무소 ○○○○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 실시설계' 중 (사)■□■□■□■□가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공정의 품을 설계하며 해당 작업인 나무주사에 관한 품 대신 영양주사(수간주사)품으로 잘못 적용하여 설계한 후 설계도서를 조선왕릉관리소에 납품하였고, 조선왕릉관리소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완수 처리하였다.

※ 영양주사(수간주사)품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 시행 시 이를 수정하여 실시

또한 (주)기술사사무소 ○○○○는 내역서(일위대가 해설)에 주입튜브에 대한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중도매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실제로는 2개 업체(☒☒☒☒☒☒, ♣♣♣♣♣)로부터 1개당 단가 견적을 받아 주입튜브의 가격을 900원으로 적용한 후 설계도서를 납품하였다.

그러나, 주입튜브의 경우 도매포장·판매 단위는 날개가 아닌 1박스(1,000개)이며, 감사기간 중('15.10.14.) ☒☒☒☒☒☒, ●●●●● 등 2개 업체로부터 도매가 견적을 받아본 결과 1박스의 견적가는 ☒☒☒☒☒☒ 396,000원(개당 396원), ♣♣♣♣ 430,000원(개당 430원)으로 (주)기술사사무소 ○○○○는 설계 당시 주입튜브 1개 단가를 900원이 아닌 396원으로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했다.

상기와 같이 주입튜브 단가가 잘못 산정된 해당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는 '2015년 홍유릉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 을 시행하였고, 아래와 같이 약 24,299천 원의 예산을 과다 지출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조선왕릉관리소에서도 직접 발주 시행한 '2014년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의 경우에도 약 17,128천 원(98,040,000-80,912,400)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

**【2015년 홍유릉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 과다 지출현황】**

주입튜브단가(원)	계약발주금액(원)	계약금액(원)	비고
900	239,754,000	200,740,500	낙찰률 87,828%
396	200,894,156	176,441,320	
차액	38,859,844	24,299,180	

이에 따라 (주)기술사사무소 ○○○○ 책임기술자(산림기술자(♠♠♠/경영 기술특급/경기도지사 '06-60)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산림기술자) 제⑤항의 제5호 “과실로 그 업무(서류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 ①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장은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주입튜브 내역서 산정 시 개당 단가가 아닌 박스 당 유통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② **조선왕릉관리소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⑤항에 따라 설계도서의 원가계산 내역을 부실하게 작성한 책임기술자(산림기술자)는 처분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시고, 관련자에게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합니다.

[관련자]

소 속	직·성명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 근무처	비고
조선왕릉관리소	●○○○○● □□□	'00.00.00. ~ '00.00.00	준공검사자	●●●관리소	
"	■■■■■■ ■■■■	'00.00.00. ~ '00.00.00	감독관	조선왕릉관리소 ○●지구관리소	



## 조치할 사항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장은 앞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분할납부 하면 보증금 예치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

##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발주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  
내 용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는 '12.12.~'15.10. 기간 중 '조선왕릉보존관리'(064-2200-2232-302-420-03) 예산을 활용하여 역사경관림 조성, 방화선 설치, 벌채 및 가지치기, 소나무 생육환경개선, 병해충 방제 사업 등 총 99건의 공사를 발주 시행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제1항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조(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단일공사(해당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 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다.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는 순강원 역사경관림 조성을 위해 순강원 능침 우측 구역(1.2ha)을 대상으로 '15.3.~'15.4. 기간 중 '순강원 역사경관림 조성 벌채 사업'('15.3.19.~'15.4.4./□□□□□□/리기다소나무·잣나무 등 590주 벌채) 및 '순강원 역사경관림 조성 사업'('15.4.17.~'15.5.2./□□□□□□/소나무 660주 식재) 등 2개 공사를 별도로 분리·발주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상기의 사업은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조선왕릉 능침주변 역사경관림정비)으로 책정되었고 동일 장소에서 시행되며 시행시기 및 과업이 유사하여 별도의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입찰한 후 단일 계약을 체결함이 타당하나 각각의 사업

으로 분리·발주하여 ■■■■■의 단일견적만을 받아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자	발주금액(원)	계약금액(원)
순강원 역사경관림 조성 별채사업	'15.03.19.~'15.04.04.	■■■■■	21,549,000	20,200,000
순강원 역사경관림 조성사업	'15.04.17.~'15.05.02.	■■■■■	22,000,000	21,000,000
합 계		1개사	43,549,000	41,200,000

또한 '12.12.~'15.10. 기간 중 방화선 설치, 별채 및 가지치기,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 병해충 방제 사업 등 총 99건의 공사를 발주하여 이중 76건에 대해 1인의 견적을 받아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76건 중 ■■■■■(25건), ◆◆◆◆(14건), ○○○○○(8건), ●●●●(7건)등 특정 4개 업체와 계약한 건이 54건(71%)으로 외부로부터 특혜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

### 조치할 사항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장은 앞으로 단일사업을 분리하여 수의계약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1인의 견적만을 받아 계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

## 주 의 요 구

제 목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배치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

내 용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동 시행령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동 시행규칙 제1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문화재수리 기술자로 하여금 ‘현장 배치 확인표’ 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에서는 2012.12월~자체종합감사일까지 발주한 ‘홍유릉 역사경관림 조성사업’ 등 61건에 대해 공사계약 체결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면서 ‘현장 배치 확인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2개 이상의 문화재수리현장이 있는 경우 별도의 승낙 없이 배치하여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합당한 수리현장 중복 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공사감독관 역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이를 미확인한 상태에서 공사를 완료하였다.

### 조치할 사항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장은 「문화재수리 등의 관한 법률」 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표’ 확인 및 2개 이상의 문화재 수리현장에 별도의 승낙 없이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

## 시 정 요 구

제 목 '금곡 양묘장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의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

내 용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는 '금곡 양묘장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에 대해 ■■■■■과 공사계약(계약기간 '14.4.23.~'14.4.30./계약금액 20,200,000원)을 체결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는 감독·검사공무원은 감독·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의 감독·검사공무원은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소속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정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연장 등의 사유 발생 시 계약 기간 중 이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계약 기간 내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준공계를 제출한 '14.5.7.에 계약 기간을 '14.5.7.까지 연장 변경한 후 해당 공사가 계약기간 내 준공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구분	계약명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계약자	지체현황	환수대상금액
공사	금곡 양묘장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14.4.23. ~ '14.4.30. 20,200,000원	■■■■■■■■	8일 지체 완공 ( '14.5.8.준공검사 완료)	161,000원

※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지체상금계산식 : 20,200,000원 × 0.001% × 8일 ( '14.5.1. ~ '14.5.8.)

이와 같이 계약을 지체한 것에 대한 지체상금을 계산한 결과 161,000원의 지체 상금이 발생하였다.

#### 조치할 사항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장은 지체상금 161,000원을 부과하시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

## 시 정 요 구

제 목 '2014년 광릉 방화선 정비사업'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

내 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따라 공사 량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는 '2014년 광릉 방화선 정비사업'에 대해 ●●●●(주)과 계약체결(2014.10.24.)하여 2014.10.24.~2014.12.16.까지 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영빈묘에 대한 '잡목관 제거 및 풀베기', '산물임내정리' 공종의 합계 금액 누락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하였다.

본 공사는 영빈묘에 대한 '산물임내정리' 등 2개 공종의 금액을 합산하여 낙찰 금액(26,380천 원)에 맞게 계약(착공)내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했으나, 시공업체의 수식합산 오류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낙찰금액을 초과하여 설계 변경함에 따라 「국가계약법」에 맞지 않는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1,220천 원(원가계산 금액 적용)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다.

### 조치할 사항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장은 과다 지급된 공사비 1,220,000원을 환수 하시고, 향후에는 설계변경 및 감독업무처리 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

## 시 정 요 구

제 목 조경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

내 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 제①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①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별법이 정하는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하자검사) 제④항에 따라 ‘하자 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에서는 2012.12.~2015.8월말까지 ‘순강원 외곽 경계 웬스 교체 공사’ 등 4건을 ‘하자보수관리부’에 누락시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제②항 제3호에 조경공사는 금액에 관계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동구릉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 10건의 조경공사에 대해 하자보증 보험증권을 제출받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장은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보수관리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미제출한 공사에 대해서는 보증금 징구 등의 조치를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 경 고 요 구

제 목 국유재산 유상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내 용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는 선릉 노외주차장(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33번지)등 20건의 국유재산에 대해 입찰 등의 과정을 거쳐 사용허가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제35조(사용허가기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종전 사용자에 대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시가표준액 또는 감정평가액)에 1천분의 50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과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사용료×해당 연도의 재산가액/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는 '14.11월 선릉 노외주차장(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33번지)에 대한 신규 사용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당시 해당 주차장에서 진행 중이던 '빗물 저류조 설치 공사'의 준공('15.6월) 시기를 고려하여 사용허가기간을 '14.12.1.~ '15.6.30.로 결정한 후 입찰 공고하여 최고가 응찰자인 △△△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 '빗물 저류조 설치 공사' 준공 후 해당 주차장에 대해서는 폐쇄할 예정이었음.

이후 '15.6월경 진행 중이던 '빗물 저류조 설치 공사'의 준공이 '15.8월까지 연장 됨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15.7.1.~'15.8.30.으로 재설정 후 기존 사용자인 △△△와

사용허가를 갱신하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국유재산 사용을 갱신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시가표준액 또는 감정평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 과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사용료×해당 연도의 재산가액/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사용료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시가표준액 또는 감정평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 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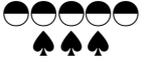
국유재산명	계약기간	계약자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른 사용료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차액
선릉 노외 주차장	'15.7.1.~'15.8.30.	△△△	57,517,400원	16,385,710원	41,131,690원

### 조치할 사항

####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장은

- ① 앞으로 국유재산 사용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사용료×해당 연도의 재산가액/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하시고
- ② 관련자에게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합니다.

#### [관련자]

소 속	직·성명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 근무처	비고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00.00.00. ~ 현재	재산관리관	조선왕릉관리소  지구관리소	
"		'00.00.00. ~ 현재	국유재산관리	"	

#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 주 의 요 구

제 목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인 건의 계약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내 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제2항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는 계약 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안내공고 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는 '13.4.4. '강릉능침주변 송림조성사업'을 발주 하면서 추정가격(부가세제외금액)을 21,387,473원으로 결정하였으면 예정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10%(2,138,747원)를 추가하여 23,526,220원으로 결정한 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612,527원(추정가격의 약 2.9%)만을 추가하여 22,000,000원으로 예정 가격을 결정한 후 ◆◆◆◆◆(주)의 견적만을 받아 수의의 방법으로 공사계약 (계약기간 '13.4.5.~'13.4.18./계약금액 21,581,000원)을 체결하였다.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자	추정가격(원)	부가세(원)	예정가격(원)	계약금액(원)
강릉능침주변 송림조성사업	'14.11.5. ~'14.11.28.	◆◆◆◆◆(주)	21,387,473	612,527 (2.9%)	22,000,000	21,581,000

또한,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는 '12.11월부터 '15.3월까지 '태릉사격장 내 아스콘 철거지 소나무 식재사업' 등 6개 사업을 발주하며 예정가격을 22,000,000원 (추정가격 20,0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 공고한 후 2인 이상의 견적을 제출받아 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각 1인의 견적만을 받아 ◆◆◆◆◆(주)등 4개사와 수의의 방법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자	예정가격(원)	추정가격(원)	계약금액(원)
태릉사격장 내 아스콘 철거지 소나무 식재 사업	'12.11.28.~'12.12.07.	◆◆◆◆◆(주)	22,000,000	20,000,000	21,340,000
태릉 강릉 수목지구설치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12.11.28.~'12.12.27.	●●●●●	22,000,000	20,000,000	21,340,000
정릉, 능침 주변 송림 조성사업	'12.12.03.~'12.12.16.	㈜▲▲▲▲▲	22,000,000	20,000,000	21,340,000
현릉 동쪽 계류 하부 정비 공사	'13.04.30.~'13.05.15.	●●●●●	22,000,000	20,000,000	21,780,000
태릉 현릉 도복위험 및 지장 수목 정리 사업	'13.05.23.~'13.06.07.	●●●●●	22,000,000	20,000,000	21,780,000
태릉사격장권역 구 택배지역 주변 소나무식재 사업	'15.03.25.~'15.03.31.	◆◆◆◆◆(주)	22,000,000	20,000,000	20,240,000
6건		4개사			

### 조치할 사항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장은 앞으로 예정가격 결정 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적정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결정하시기 바라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추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 주 의 요 구

제 목 ‘방화선 정비사업’ 문화재수리업자 입찰참여 조건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내 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①항에 따라 각종양관서의 장은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실적으로 제한 시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 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신규업체 및 중소기업의 공공입찰참가를 막는 과도한 제한(운영지원과-6785호/2014.6.17.)이 설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하여야 한다.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에서는 2013년에 ‘헌릉 방화선 설치사업’을 발주 하면서 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자격을 “전문문화재수리업자(조경업) 중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최근 3년 이내 방화선 설치사업 실적이 금회 추정금액(29,001천 원)이상인 자” 로 규정하여 ■■■■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위와 같이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의 실적을 보면 조선왕릉 각 지구관리소에서 시행한 ‘방화선 정비사업’을 수의계약(2012년 서오릉 방화선 낙엽 긋기 등 5건 / 53,291천 원)으로 실시한 업체에서만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가격 입찰 1위 업체는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지 못하고, 2위 업체가 적격자로 결정되어 소규모 공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신규업체 참여의 기회를 막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 조치할 사항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장은 「국가계약법」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과다하게 제한을 두어 신규업체의 진입을 차단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 시 정 요 구

제 목 '선릉·정릉 야간 경관등 전기선로 보수공사' 정산 등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내 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는 “계약담당공무원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 시 정산절차 등)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토록 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는 '선릉·정릉 야간 경관등 전기선로 보수공사' 에 대해 ○○○○○○○와 공사계약(계약기간 '15.5.7.~'15.7.9./계약금액 82,527,420원) 체결 후 계약변경(계약기간 변경 없음/계약금액 79,629,640원)하였고, 2015.7.9. ○○○○○○○가 해당 공사의 준공계를 제출하자 감독공무원은 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소장에게 보고 (2015.7.14.)하고 ○○○○○○○로 하여금 재시공하게 한 후 2015.7.21. 준공처리하였다.

※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 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지체상금계산식 : 79,629,640원×0.001%×8일(15.7.14.~ '15.7.21.)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는 상기와 같이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었으면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대금 지급 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을 확인하여 함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공사비를 지급하여 아래와 같이 총 4,812,710원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구분	계약명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계약자	지체상금 미부과액	국민건강보험료 등 미정산액	합 계
공사	선릉정릉 야간 경관등 전기 선로 보수공사	'14.5.7. ~'15.7.9. 79,629,640원	☞☞ ☞☞☞☞	637,030원	4,175,680원	4,812,710원

### 조치할 사항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장은 지체상금 부과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미정산액 4,812,710원을 환수하시고, 향후에는 정산업무처리 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 시 정 요 구

제 목 '헌릉 방화선 설치공사'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내 용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에서는 2013년 가을철 및 봄철 산불로부터 헌릉의 목조문화재 및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 '헌릉 방화선 설치공사' 를 ○○○○과 공사 계약(2013.10.22.)을 체결하고 사업을 완료하였다.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 공고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명시하고, 제94조(대가지급 시 정산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토록 하여 이를 확인하고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에서는 상기 공사에 대해 대가지급 시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정산을 실시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료 등 3종에 대해 총 924,000원(원가계산 적용금액)을 과다하게 지급한 결과가 발생되었다.

### 조치할 사항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장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3종 미정산액 924,000원을 환수하시고, 향후에는 정산업무처리 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 시 정 요 구

제 목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조경공사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내 용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에서는 왕릉 경역 내 문화재 경관 및 관람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공한지에 대해 이를 전통원림으로 복구하고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문화재수리업자(조경업)에게 조경공사를 발주하고 있다.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는 2013~2015년 10월까지 '태릉 동쪽광장 송림 조성사업' 등 9건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하자검사('15.6.21.)를 실시하여 검사 당시에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자체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15.10.21.) 결과 2개 사업장 (태릉 서쪽광장 공한지 송림조성사업, 태릉 사격장권역 구 택배지역 주변 소나무 식재사업)에서 소나무 18주(H4×W2×R15)가 고사(재시공 시 13,157천 원)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조치할 사항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장은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분리 발주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내 용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는 '서오릉 신축역사문화관 주변 정비' 등의 사업 시 조선왕릉보존관리(064-2200-2232-302-420-03)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실시하였고, 병해충 방제, 경관조성, 방화선 설치 등의 사업 시 상기 예산항목의 '4. 조선왕릉 경관정비 및 관리' 의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제1항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조(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단일공사(해당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 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는 '14.9월 '서오릉 신축 역사문화관 주변 조경 설계' 를 한 후 '14.11.5.~'14.12.11.까지 '서오릉 신축사무실 주변 법면보호 돌쌓기 사업', '서오릉 역사문화관 주변 공한지 잔디식재 사업', '서오릉 역사문화관 관람로 정비사업' 등 3개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상기의 사업은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되었고 설계서 등에 의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이므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입찰한 후 단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각각 ●●●●●●(주), ○○○○○○, (주)●●●●●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자	발주금액(원)	계약금액(원)
서오릉 역사문화관 주변 법면보호 돌쌓기 사업	'14.11.5.~'14.11.17.	●●●●●●(주)	21,286,000	20,700,000
서오릉 역사문화관 주변 공한지 잔디식재 사업	'14.11.5.~'14.11.17.	⓪⓪⓪⓪⓪⓪	21,991,000	21,300,000
서오릉 역사문화관 관람로 정비사업	'14.12.2.~'14.12.11.	(주) ●●●●	19,580,000	18,400,000
합계		3개사	62,857,000	60,400,000

또한 '12.11.~'15.11. 기간 중 방화선 설치, 가지치기, 소나무 생육환경개선, 병해충 방제 등의 사업 시 조선왕릉보존관리(064-2200-2232-302-420-03) 중 '조선왕릉 경관 정비 및 관리' 예산을 활용, 총 63건의 공사를 발주하여 이중 60건에 대해 1인의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15.3.~'15.4. 기간 중 실시한 '서오릉 소나무 피압목 벌채 및 가지치기 사업'과 '서오릉 사무실 및 관람로 변 위험수목 가지치기 사업'의 사례와 같이 과업 내용이 유사하고 사업 시기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통합하여 발주함이 타당하나 이를 분리하여 각각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다.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원)
서오릉 소나무 피압목 벌채 및 가지치기 사업	'15.3.6.~'15.3.21.	▲▲▲▲	수의계약	19,580,000
서오릉 사무실 및 관람로변 위험수목 가지치기 사업	'15.3.26.~'15.4.5.	▲▲▲▲	수의계약	18,900,000

### 조치할 사항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장은 앞으로 단일 공사인 경우 분할함 없이 계약체결 하시고, 사업시기 및 과업이 유사한 사업일 경우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관련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 주 의 요 구

제 목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내 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제2항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는 계약 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 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안내공고 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는 ‘14.11.3. ’서부지구 참나무시들음병 고사목 벌채 및 훈증사업’을 발주하며 추정가격(부가세 제외금액)을 20,725,184원으로 결정 하였으면 예정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10%(2,072,518원)를 추가하여 22,797,700원으로 결정한 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자를 선정 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482,426원(추정가격의 약 2.3%)만을 추가 하여 21,207,000원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주)▲▲▲▲▲▲▲▲의 견적만을 받아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계약기간 ‘14.11.7.~’14.11.28./계약금액 19,080,000원)을 체결 하였다.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자	추정가격(원)	부가세(원)	예정가격(원)	계약금액(원)
서부지구 참나무시들음병 고사목 벌채및훈증사업	‘14.11.5. ~’14.11.28.	(주)▲▲▲▲▲ ▲▲▲▲	20,725,184	482,426 (2.3%)	21,207,000	19,080,000

또한,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는 '15.3월부터 '15.7월까지 '서오릉 역사문화관 주변 수목 식재 사업' 등 5개 사업을 발주하며 예정가격을 22,000,000원 (추정가격 20,0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 공고한 후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각 1인의 견적만을 받아 △△△△△△(주)등 4개사와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자	예정가격(원)	추정가격(원)	계약금액(원)
서오릉 역사문화관 주변 수목 식재 사업	'15.03.06.~'15.03.21.	△△△△△△(주)	22,000,000	20,000,000	20,240,000
서오릉 소나무 피압목 벌채 및 가지치기 사업	'15.03.06.~'15.03.21.	●●●●	22,000,000	20,000,000	19,580,000
피주삼릉 피주장릉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	'15.03.18.~'15.04.02.	(주)▲▲▲▲▲	22,000,000	20,000,000	20,460,000
서오릉 경릉 화장실 정비공사	'15.03.19.~'15.04.11.	(주)●●●●●	22,000,000	20,000,000	21,000,000
응릉 여자화장실 정비공사	'15.07.21.~'15.08.04.	(주)●●●●●	22,000,000	20,000,000	20,240,000
5건		4개사			

### 조치할 사항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장은 앞으로 예정가격 결정 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적정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결정하시기 바라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추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 시 정 요 구

제 목 '화성 용·건릉 상수도관 인입 및 급수전 설치공사' 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내 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는 감독·검사 공무원은 감독·검사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에서는 ●●●●과 '화성 용·건릉 상수도 인입 및 급수전 설치공사' 를 계약(2015.3.5. / 86,322천 원)체결하여 2015.4.20. 공사를 준공하였다.

상기 공사 설계도서에 의하면 터파기 후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잡석을 15cm 시공한 후 롤러로 다짐하도록 되어 있으나, 잡석 시공 후 다짐은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준공처리함으로써 미시공한 다짐 비용 673,000원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다.

### 조치할 사항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장은 과다 지급된 공사비 673,0000원을 환수 하시고, 향후에는 감독업무처리 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 시 정 요 구

제 목 '파주 삼릉 상수도관 공사' 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내 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경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 량의 증감 등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에서는 △△△△과 '파주삼릉 상수도관 추가공사' 계약(2014.10.14./19,500천 원)을 체결하였으며 2015.10.24.일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상기 공사 내역서에 의하면 현장 내에서 발생한 토사는 차량을 이용하여 잔토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공사는 터파기 한 후 토사 전량을 그대로 되메우기하여 토사가 발생되지 않아 잔토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설계변경 등 감액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처리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 잔토처리 비용 1,425,000원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다.

### 조치할 사항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장은 과다 지급된 공사비 1,425,000원을 환수 하시고, 향후에는 감독업무처리 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 제도상 개선요구

제 목 조경공사 관련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조선왕릉관리소

내 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제①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에서는 조경공사를 계약하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 적용에 대해 ‘풀베기 사업 1~2년’, ‘방화선 구축사업 2년 또는 하자 미 적용’, ‘가지치기사업 1~2년 또는 미적용’, ‘방제사업은 1~3년’ 으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동일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각각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적용하고 있어 계약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되었다.

### 조치할 사항

조선왕릉관리소장은 소속기관(동부, 중부, 서부지구관리소)에 관련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는 조경관련 공사에 대해 동일하고 객관성 있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되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왕릉관리소 중부, 서부지구관리소

## 주 의 요 구

제 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적격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조선왕릉관리소 중부, 서부지구관리소

내 용

‘문화재수리’란 지정문화재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하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에 따라 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에서는 2012~2013년까지 문화재 보호 및 국유 재산 경계구역 설정 등을 위해 물품구입(시공비 포함)으로 ‘태릉외곽 웬스교체 설치공사’ 등 4건(1,413경간, 295,079천 원)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에서는 2012~2015년까지 ‘과주 삼릉 외곽경계울타리 웬스 설치공사’ 등 6건(1,520경관, 214,463천 원)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상기 공사는 사적지내에서 경계 웬스에 대한 지지를 위해 하부 구조물(콘크리트)을 만들어 현장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미한 문화재 수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문화재수리업자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웬스 제작업체에 물품 구입하여 현장에 시공하였다.

### 조치할 사항

조선왕릉관리소 중부, 서부지구관리소장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미한 문화재 수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적용을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선왕릉관리소 동부, 중부, 서부지구관리소

## 통 보

제 목 다목적 산불진화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조선왕릉관리소

내 용

조선왕릉관리소 동부, 중부, 서부지구관리소에서는 매년 산불방지 종합대책기간(봄철 : 2.1.~5.15./ 가을철 : 11.1.~12.15.)을 설정하고 상황실 설치, 비상근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에 산불화재 초동진압 등에 대응하고자 다목적 산불진화 차량을 구입하여 각 현장에 배치하였고 자체종합감사일까지 3개 지구 관리소에 대한 차량운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운행 현황】

(2015.1.1.~10.13.일까지 기준)

구분	차량대수	차량이용일수 (단위/회) / ( )는 관외 출장			
		계	소방활동	경내직업	출장업무
계	8	732(1)	40	364	328(1)
동부지구관리소	3	414(1)	34	167	213(1)
중부지구관리소	3	55	3	22	30
서부지구관리소	2	263	3	175	85

상기 차량은 산불 및 목조문화재 화재대비 119 소방차, 소방헬기 등 화재진압 장비가 화재현장 도착 전까지 초기화재에 대응하고자 구입한 장비로 해당 능관리 경내를 벗어나 소방활동 외 출장업무 등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조선왕릉관리소장은 소속기관 (동부, 중부, 서부지구관리소)에 대해 다목적 산불진화 차량에 대한 합리적 운행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